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56317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6. 2. 26.

판결 선고2016. 4. 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914,324원 및 그 중 998,537,040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5.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411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5. 5. 13. 체결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5. 5. 13. 접수 제62106호로 마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3. 7.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하는 채무에 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라 신용보증한도액을 10억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3. 7. 5.부터 2015. 7. 3.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 때에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지급하되 보증채무의 이행일

다음날부터 각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피고 회사가 변제한 금원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3. 7. 5.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변제기한을 2014. 7. 4.로 정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의 변제기한은 2015. 7. 3.까지로 한차례 변경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28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5. 5. 29.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 원리금 1,003,485,280원(= 원금 1,000,000,000원 + 이자 3,485,2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설정행위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로 각 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등기설정행위'라 한다).

별지 목록 1	피고 C	2015. 5. 12. 매매예약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5. 12. 접수 제41132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목록 2	피고 D	2015. 5. 13.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5. 5. 13. 접수 제62106호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2015. 9. 8.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 중

4,948,24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은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채무 원금에 충당되고, 원고가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피고 회사로부터 변제되지 않은 잔액이 5,206,74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구상금 채무 998,537,040원(= 1,003,485,280원 - 4,948,240원), 피고 회사가 이미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피고 회사의 변제일인 2015. 9.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70,544원(= 4,948,240원 $\times$ 17/100 $\times$ 74/365)¹⁾, 원고가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잔액 5,206,740원을 합한 1,003,914,324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잔여 구상금 채무액 998,537,04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회사, B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5. 10. 21.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조건부·기한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각 등기설정행위 당시(2015. 5. 12., 13.)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등기설정행위로부터 약 10일 뒤인 2015. 5. 22. 피고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15. 6. 26.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갑 제7(가지번호 포함),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부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5.경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당시 시가 2억 3,000만 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전세권(3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8,000만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원금만으로도 10억 원을 초과하여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B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인 피고 C, D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내지 사정이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2. 12. 접수 제411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40740호)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C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B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내지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설정행위는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김은교

판사신성욱

별지

1) 원 단위 미만 버림